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 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사례로1)

이영미*

들어가는 말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 국민들은 국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겪는다.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남성들의 경우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며,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에서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각 처에서의 삶을 지켜낸다. 필요한 경우 간호병이나 보조 인력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산업전선에서 일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의 인권과 생존의 권리가 무시된 추방과 학살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류의 전쟁역사는 국가의 혼란기나 전쟁시 인권이 유린된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여준다. 전쟁 중 여성이 남성들의 성욕해소나 집단성폭력의 대상이 된 사례는 한국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전쟁이야기 속에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여성인권

* 한신대학교, 구약학

1)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유린 사건으로 일본군에 의해 운영된 성노예제인 ‘위안부’²⁾ 제도가 있다면, 구약성경에서는 사사기 19-21장의 기브아에서의 윤간, 아베스길 르앗 처녀들과 실로 여인들의 집단 납치와 강간 후 결혼을 강요당한 사건이 있다. 이 글은 극단적인 여성인권유린의 현장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를 통해 유사한 비극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여성들의 추방의 경험을 회고하고, 이를 해방을 위한 연대의 기억들로 바꿔나가게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라도 전쟁 중의 성폭력으로 피해당한 여성의 공통된 추방경험을 담은 두 이야기를 들려준 후, 두 이야기의 해석학적 합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72년 오키나와에서 배봉기가 최초로 폭로하였지만³⁾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2)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봉사하면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이들은 ‘정신대,’ ‘중군위안부,’ ‘위안부’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93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공식용어로 “Korean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 by Japan”(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로 정하였다. 유엔의 공식용어가 위안부제도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명칭이지만, 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점, 그리고 ‘위안부’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어 익숙한 점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안부’ 용어 개념에 대해서는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서울: 역사비평사, 1997); 강정숙, “역사용어 바로쓰기: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317; 김미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5 (2009), 219-220 등을 참조하라.

3) 이명원, “2차 대전 말기, 오키나와 전쟁에서의 조선인 군부와 중군위안부의 전쟁체험,”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3. 9), 9.

것은 한국여성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계속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서였다. 1988년 당시 교회여성연합회 위원이던 윤정옥 교수가 종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 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 안에 정신대 연구위원회가 신설되고 이를 모체로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되었다. 이후 1991년 8월 14일 67세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과거에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참혹한 추방과 학살의 경험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은 238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48명이다. 해외에 잔류한 피해자의 경우는 20여 명의 생존이 확인되고 있다.⁵⁾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⁶⁾과 제한된 사료들을 통해 재구성 해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1.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실태

위안소가 개설되기 시작하는 것은 1931-2년 경, 중국 상해 등의 일본군 주둔지에서이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군위안소 설치가 급증하였다. 위안소를 개설한 취지는 일본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본군의 성욕을 해소하고, 점령지역에서 일본군이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막아 치안을 유지하고 황군의 위엄을 손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성병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을 제공해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
- 4)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한 날인 8월 14일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 3회를 맞이하였다.
 - 5) 2001년 12월 현재 기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부, 2002), 2 참조; 강영심, “중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143에서 재인용.
 - 6) 정신대연구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총 7권의 증언집에 92명의 증언자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증언집 목록은 참고문헌을 보라.

위해서였다.⁷⁾ 위안소의 형태는 대체로 1. 군 직영, 2. 군이 감독 통제하는 군(군인, 군속) 전용 위안소, 3. 일정 시기 군이 민간의 매매음업 등을 병사용으로 지정하는 군 이용 위안소로 나누어진다.⁸⁾

1942년 당시 위안소는 중국에 280개 이상, 동남아시아에 120개 이상의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2명의 증언을 근거로 그들이 연행되었던 지역을 정리하여 일본군 위안소가 배치된 지역 및 인원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중국	팔라우	대만	파푸아 뉴기니	보르네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
57명	4명	8명	3명	1명	8명	7명	2명
필리핀	일본	몽고	미얀마	캄보디아	사할린	말레이시아	홍콩
2명	8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일본군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운영을 직접 담당 혹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42년 9월 3일자 육군성 중앙 과장회보에는 중앙의

7)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의정활동자료집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997), 43-59; 정진성,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01-118; 김미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223-5에서 재인용.

8) 1939년 재 중국 제 21군 사령부의 『戰時旬報』; 강선미, 야마시다 영애(山下英愛),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78에서 재인용.

9) 강영심, “종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146. 이 통계는 강영심이 한국정신대연구소발행 ‘위안부’ 증언집과 여성부 발행 증언집의 피해자 92명의 증언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총합계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지역 이상으로 이동한 사례가 포함된 때문이다.

직접 지도로 “장교이하 위안시설 복지 100개소, 중지 140개소, 남지 40개소, 남방 100, 南海 10, 樺太 10개소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있고 1942년 육군성 경리국 건축과에서는 해외 파견군에 총 32,103,700개의 콘돔을 보낸 기록이 확인되었다. ‘위안부’ 제도와 관련한 육해군이나 정부관련 자료가 32건 공개되었다. 그 가운데 만주중앙은행 안산 지점이 관동군과 제4과의 승인을 거쳐 공적인 군용비로 일본군 ‘위안부’ 조달전용자금 입금을 했던 기록이 발견되는 등 일본군의 ‘위안부’ 알선업자의 비용지불에 대한 증거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문서자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계획입안, 업자의 선정, 의뢰, 증명서 발급, 자금알선, 징집할 여성들의 숫자 산정, 여성모집, 여성 수송 및 운반, 감독과 통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해준다.¹⁰⁾

1.2. 일본군 ‘위안부’들의 강제징집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자유인의 징표인 거절할 자유가 없었던 점 뿐 아니라 동원자체도 강제적이었다는 점이다.¹¹⁾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공창제의 자발적인 참여자로 왜곡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여성의 동원에 일제 행정부/군부의 개입을 회피하고, 동원의 강제성을 무마시키고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자본으로 환원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정진성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시 군 ‘위안부’ 동원은 민간인과 군관이 모두 나서서 사기와 폭력의 방법을 닦치는

10) 야마시타 아키히코, “일본군 성노예제도 문제와 기독교 피해자 정의와 국가 정의의 이분화,” 홍민기 옮김, 『기독교사상』 66 (2014), 59-60.

11) 김찬규, “강제연행 중군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기독교사상』 405 (1992), 165.

대로 사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한 강제연행이었다고 단언한다.¹²⁾ 한국정부의 ‘위안부’ 피해신고 자료를 보면, 조선인 ‘위안부’ 동원에 있어 취업사기에 의한 연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과 협박에 의한 연행인 것으로 나타난다.¹³⁾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10대 소녀들로 증언한 피해자 중 가장 어린 나이가 11세에 끌려간 경우이다. 이들은 위안소의 조그만 방에 갇혀 하루에 20-30명, 심지어 50여명에 달하는 일본군들의 성노예를 강요당하였다. 도망하거나 성행위를 거부하면 일본군인의 고문, 구타로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기 일췌였다.¹⁴⁾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공창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관리매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일본사회의 공창제도를 전시 하 군대에 확장 적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안부’들의 상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연행에 의한 성노예의 강요였다는 점에서 공창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1.3. 전쟁 후 귀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두 번째 추방경험

일본 패망과 더불어 일본군은 ‘위안부’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귀환하는 방도를 몰라 방황하던 이들이 중국각지에서 상해로 모여들고 이들을 집단으로 관리하고자 집단수용소를 설치한 후 귀환시킨 사례가 상해지역의 한국부녀공제회였다. 수용자 총수는

12) 정진성, “군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73 (1998), 217.

13)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66-67.

14) 강형심, “중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149.

790명으로 남자 14명과 여자 776명으로 여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아 70%에 해당하는 542명이었다. 특히 20대 초반의 여자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상당수가 10대 후반에 ‘위안부’로 끌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군 ‘위안부’로 희생된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환향녀’의 비난을 받게 될 공포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귀환하지 못한 피해여성들은 현지의 중국남성들과 조선족과 결혼하였다. 결혼 상대자인 중국남성들은 대개 재혼이거나 전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난하거나 장애자인 사람들이었다. 언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에 의한 무지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남편과 시댁의 학대가 심했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귀국을 시도하지 않거나 귀환을 포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제적 인식과 순결이테올로지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지속적인 강간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적폭행피해’로 인한 수치감을 느꼈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전력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부가 ‘위안부’제도의 본질을 은폐하고자 이를 공창제로 호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매춘과 혼돈하는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더불어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주위시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귀환을 꺼리거나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였다.¹⁶⁾ 한국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와 더불어 순결이테올로지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압박은 ‘위안부’로서의 실제적인 추방경험에 더하여 공동체로부터의 재추방을 경험하게 하였다.

15) 강영심, “중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153.

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300. 강영심, “중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168에서 재인용.

2.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대한 기억과 해방을 향한 연대

1972년 오키나와에서 배봉기가 ‘위안부’로서의 실상을 폭로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한 채 묻힌 것은 그의 목소리를 공명하고 함께 기억해주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과 한국여성단체와 국제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지는 그들이 추방경험의 아픔을 딛고 해방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2.1. 가해자 일본군부와 일본 정부의 대응

일본군의 ‘위안소’ 제도 개입을 부정하던 일본 정부는 1991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어지는 증언과 함께 1992년 1월 11일에 일본에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 군부의 ‘위안소’ 운영을 증명하는 군부의 문서를 발표하자 더 이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1월 16일 한국을 방한한 미야자와 수상이 한국 국회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소’에의 관여를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¹⁷⁾ 일본의 첫 공식적인 반응은 1993년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 관방장관 담화인 소위 ‘고노 담화’이다. 이후 1994년 12월 7일 무라야마 내각은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었다. 1994년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양국 간의 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왔으므로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중군 ‘위안부’ 정책이 국제법 위반이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이라는 민간 기금을 조성하여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위로금을 지급

17)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316.

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대부분의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기금을 거절했다.

1998년 4월 일본 아마구치현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된 3명의 한국인 여성들에게 3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일본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01년 히로시마 법원에서의 2심 재판과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반복하여 원고 패소 확정을 받았다.¹⁸⁾ 일본정부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한,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위안부’ 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제1차 아베 내각은 ‘군이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라는 내각 차원의 결의를 표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했다. 2012년 4월 일본정부는 ‘분쟁 하에서의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G8 선언에 함께 참여하였고, 201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아베 총리가 “21세기 바로 지금도 무력분쟁 아래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밝히며, “불행하게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연설을 행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하기까지 하였다.

18) 조선일보 2003년 3월 26일자 보도. 김희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아세아연구』 53:3 (2010), 79-80에서 재인용.

19) 김찬규,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167-8.

2.2. 국제사회단체의 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증언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성운동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국제사회단체의 지원이 뒤따랐다. 아시아의 피해국 단체들이 모여 ‘아시아연대회의’를 1992년부터 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1992년 8월 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일본의 천황제 과시즘과 군국적인 국가권력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강제연행, 윤간, 고문, 학살 등 전대미문의 잔학한 범죄”이며, 이것은 “가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에 의해 발생된 비극”이라고 규정하였다.²⁰⁾

199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각료회의 등에서 전쟁 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ILO의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1조 2항, 14, 15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25조에 근거하여 이 강제노동의 불법적 시행은 형사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996년 ILO 전문가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란 보고서를 공표하고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일본은 1932년 국제노동기구 29호 조약(강제노동조약)에 가입하였다.

대부분의 국제사회의 분석은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의 한 형태였다고 결론짓는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매춘, 성적 압력, 학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윤간, 심각한 육체의 학대 등을 고려할 때 ‘위안부’

20) 강선미, 야마시다 영애(山下英愛),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53에서 재인용.

보다는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말한다.²¹⁾ 2000년 12월에는 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법정인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개최했다. ‘여성 국제 전범 재판은 아시아 여성들의 주도에 의한 국제적 여성 네트워크로, 국가의 전쟁책임과 전쟁수행자의 가해책임을 명확히 한 획기적인 행사였다.’²²⁾

2.3. 한국 여성단체들의 연대

1990년에 설립된 정대협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²³⁾ 김정란은 ‘위안부’ 운동이 세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고 구분한다.²⁴⁾ 제1기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단체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상이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의 ‘성적 타락’으로 치부되던 ‘위안부’ 피해가 ‘한국여성에 대한 일본제국의 성침탈’로 재인식되고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었다. 제 2기는 일본의 국민기금과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위안부’ 문제는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국민기금은 현재적

21)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ddendum* (E/CN.4/1996/53/Add.1), 1996, 12;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탈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2 (2003), 44에서 재인용.

22)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과 판결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히로히토 유죄』 금정조 외 17인 공동번역(2007)을 참조하라.

23) 자세한 내용은 <http://womenandwar.net> 참조.

24)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학년도 박사학위 논문 (2004), 25-31.

형태의 민족적 침략으로 간주되었다. 제3기는 여성법정이 개최되어 일본 정부가 배상판결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군사적 성노예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한국 여성주의 단체의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지지 운동은 ‘위안부’ 여성들을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자화 시키며 운동의 대상으로, 수혜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아시아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연대 속에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히 19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소녀상 건립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추방경험이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끈을 이어주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해방이란 일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3. 두 번째 이야기: 윤간과 집단전쟁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삿 19-21)

사사기 19-21장은 문밖으로 내동댕이쳐진 채 밤새 윤간당한 한 여인의 비참한 성폭력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전쟁 중에 집단으로 납치 당하고 강간 당한 집단 전쟁 성폭력의 사례를 보여준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성폭력 사건들은 시대는 달리하지만 남성중심의 성윤리를 바탕으로 강제성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이라는 점과 그 배경에 부계혈통을 기초로 한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순결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문밖으로 내동댕이쳐진 채 밤새도록 윤간당한 레위남자의 아내(삿 19)

사사기 19장은 한 레위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친정으로 돌아와 4개월 간 머문 여인이 그의 남편을 따라 ‘야훼의 집(베트 아도나이)’으로 가는 중(19:18) 기브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다. 레위 남자와 그의 아내²⁵⁾가 기브아 성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를 때 그 성의 불량배(아느세 브네-벨리아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주인에게 레위남자를 내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벨리아알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그들이 쓸모없고, 사악하며, 선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존재들을 의미한다.(신 13:13; 삿 19:22; 20:13; 삼상 2:12; 10:27; 왕상 21:10, 13) 이 말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²⁶⁾ 이 불량배들이 레위남자를 문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그를 알기(야다) 위해서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주인은 그들의 요구가 ‘망령된 일’(19:23, 25)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네발라는 세겔사람들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창 34:7), 암몬이 공주 다말을 강간했을 때(삼하 13:12, 13),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행위를 가리킬 때(렘 29:23) 사용되었다. 키이페(A. Keefe)는 단순한 강간사건과 달리 네발라로 표현되는 강간은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공동체를 향해 무질서, 혼돈 그리고 평화를 붕괴시키는 죄악”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²⁷⁾

25) 히브리어 필레게쉬(*pilegesh*)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다른(두번째) 부인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첩’으로 번역하지만 포용적 언어로의 번역을 위해 ‘아내’란 말을 사용한다. 미크 발(*Mieke Bal*) 역시 이 용어는 ‘첩’이 아닌 ‘아내’로 번역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83-86.

26)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조호진 역, WBC 8 (서울: 솔로몬, 2011), 955.

27) A. Keefe, “Rapes of Women/ Wars of Men,” *Semeia* 61(1993), 82; Koala Jones-Warsaw, A. Brenner, ed., “Toward a Womanist Hermeneutic: A Reading of Judges 19-21,” *A Feminist Companion to Judg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78.

그 ‘망령된 일’이 정확히 무엇이건 간에 주인에게는 자신의 딸과 레위남자의 아내의 안전보다는 손님인 레위 남자가 더 중요하고, 주인은 레위 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녀인 자기 딸과 레위남자의 아내를 내어줄 것을 제안한다. 여성은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남성중심적 세계관이 이 내용에는 함축적으로 들어있다(창 19장 참조).

주인 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레위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잡아(하짜크) 밖으로 내보낸다. 그들이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이고(야다),” “능욕하다(알랄)”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 여기서 그들이 레위남자를 ‘알고 싶어 했다’는 말의 정체가 성적 의미를 지녔음이 분명해 진다. 집 주인이 자신의 딸과 레위 남자의 아내를 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공범이지만, 레위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잡아서 밖으로 내보낸 자는 레위남자였다. 레위 남자는 공범의 수준을 넘어 아내가 기브아성의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밤새 윤간을 당한 레위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 집의 문에 이르러 새벽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 여기서 문은 26, 27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안전지대의 경계를 상징하고 있다. 랩슬리(Lapsley)는 “문 안은 안전함과 쉼이라는 이미지인 반면, 문 바깥은 고통과 버려짐의 이미지”라고 대조시킨다.²⁸⁾ 그 여인이 문에 쓰러져 있었다는 묘사는 그녀가 자신이 당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위로를 요청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무참하게 묵살된다. 남편은 그녀를 문 안으로 데리고 가 상태를 살펴보는 대신,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를 나귀에 싣고 문 밖으로 나가 길을 떠난다. 희랍어 번역본에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문구가 첨가되어있지만, 히브리어 본문(MT)은 그 여자가 아무 대답이 없다고 말할 뿐이어서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고향에 도착한 레위 남자는 곧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당한

28) J. E. Lapsley, “A Gentile Guide: Attending to the Narrator’s Perspective in Judges 19-21,” 47; 버틀리, 『사사기』, 962에서 재인용.

폭력을 응징해줄 것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아내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낸다(19:29). 그러나 이처럼 정의를 부르짖으며 죄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토록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바깥으로 내동댕이쳤던 레위 남자라는 점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3.2. 가해자의 은폐가 낳은 또 다른 폭력: 전쟁과 한 부족의 말살(삿 20장)

배달된 시체토막은 성폭력의 잔혹함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는지 모른 백성이 곧바로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연다. 병사만으로도 사십만 명이었다(20:2). 총회는 레위 남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아내를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아내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찌마)과 망령된 일(네발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는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삿 20:4b-7)

레위남자의 증언은 사사기 19장이 들려주는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 우선 19장에서는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아느세 브네-벨리야알)이 몰려와서 레위남자와 그의 아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쌌지만(19:22) 여기서는 기브아의 주인들(바알레 학기브아)이 집을 에워쌌다고 말한다. 둘째로, 그들은 레위인을 죽이려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알기 위해서(야다)’ 집주인에게 그를 내보내 줄 것을 요구했었다(19:22) 셋째로, 레위남자의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운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게 되도록 그 여인을 밖으로 강제로 내동댕이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그의 침묵은 사건을 왜곡, 확장시키는 원인이 된다. 끝으로 밤새 윤간을 당한 그 여인이 죽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시체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동틀 때에 남편이 머무는 집의 문(페타흐)에 이르러 쓰러져 있었다. 만일 그녀가 죽었었다면 레위사람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을 저지른 셈이 된다.

자신의 죄책 고백이 빠진 레위 남자의 왜곡된 진술은 곧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굳게 단결하여(하베림) 그 응징의 대가로 기브아 사람과 베냐민 지파를 향한 전쟁 선포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하기에 이른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권능을 주었던 사사들 중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온 지파의 일치단결을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한 곳에서 온 이름 없는 레위 남자가 이끌어낸 것은 정말로 놀랍다.

3.3. 야베스-길르앗과 실로의 처녀들에 대한 집단 전쟁 성폭력의 현장(삿21장)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의 승리로 끝나고 립몬으로 도망친 600명의 군사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는 전멸 당한다. 총회 참석자들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한 맹세 때문에, 광야로 피신한 베냐민 남자 600명은 아내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멸종의 위기를 맞는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멸종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지도자들은 야베스-길르앗 주민이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리고 병사 만 이천명을 야베스-길르앗에 보내 그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몰살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 립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준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후계를 잇기 위한 아내 사냥이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란 순결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도 200명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지 못하자 지도자들은 두 번째 묘책을 내어 이번에는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출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도록 한다.(21:20-21)

가해자의 왜곡된 기억(증언)과 가부장적 체제(부계혈통계승)를 지키려는 가부장의 세력의 독단적인 결정들은 베냐민지파의 멸종, 무고한 야베스-길르앗 주민들의 몰살과 그 지역의 400명의 처녀들에 대한 집단 납치와 강간, 실로에서의 200명의 처녀들의 집단 납치와 강간 등 비극이 비극을 낳는 참사를 보여준다. 특별히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희생은 12지파를 근간으로 한 부족연맹체의 체제/조직 유지와 부계혈통의 계승의 가부장적 구조를 존속하기 위해 여성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타자화시킨 대표적인 일화이다. 나이디취(Niditch)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동맹체로 묶인 지파 연합이 연합체로서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패러디”라고 비판한다.²⁹⁾

4. 기브아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응들

4.1.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기브아에서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개별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토막 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후 의견을 말하자”(19:30, 사역)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한다는 구절의 ‘이 일(알레이하)’는 3인칭 여성 단수로 ‘이 사건을

29) S. Niditch, “The ‘Sodomite’ Theme in Judges 19-20: Family, Community, and Social Disintegra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4 (1982), 374.

뜻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버틀러(Trent C. Butler)는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설화자의 설명에 대한 의미를 “독자들은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의 스토리들 중 가장 위대한 스토리인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비교해야만 한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고, 또한 논의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비겁한 행동들 역시 이스라엘에서 기억하지 않은 채 넘어가거나 혹은 보복당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된다”³⁰⁾는 것으로 풀이한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조직적인 반응은 20장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단합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모이면서 소개된다. 그들은 레위 남자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기브아 사람들과 그에 동조하는 베냐민 지파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20:11)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맹세하고(21:5)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보내지 않기로 맹세한다(21:1, 18). 고소를 위해서 최소한 두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신 17:6-7), 여기서는 레위남자의 증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결한다.

19장에서 토막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일 혹은 여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 20장에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일사분란한 군사적 대응을 동반한 지파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전쟁이 선포된다. 두 반응의 차이에 대해 메이스(Mayes)는 19장은 왕조의 필요성을 보여준 반면, 20-21장은 “지파 연합”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1장이 19장에 이차적으로 첨가되었다는 주장한다.³¹⁾ 아마이트(Y. Amit)는 20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 “통합되

30) 버틀러, 『사사기』, 964-5.

31) A. D. H. Mayes, “Deuteronomistic Royal Ideology in Judges 17-21,” *Biblical*

고 훌륭하게 잘 운영되는 조직의 모습, 즉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고, 죄인에게 벌주고, 또 합당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³²⁾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여 의논한 후 대체를 마련하기에 앞서 레위 남자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진행된 급박하고 극단적인 지도자들의 결정은 ‘한사람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지파를 말살하고 멸종 위기에 빠뜨리는 우매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기브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총회 지도자들의 대응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 선포였는가? 기브아에서의 성폭력을 정죄하는 이유가 레위인의 영예를 더럽힌 사건이기 때문이었는가,³³⁾ 아니면 인간으로 죽음에까지 이른 한 여인의 끔찍한 운명을 애도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는가?

4.2. 성서편집자의 반응

사사기 19-21장은 사사기의 부록(후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간주된다.³⁴⁾ 편집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17:6; 18:6; 19:1; 21:25)라

Interpretation 9 (2001), 254-55.

32) Y.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38, (Leiden: Brill, 1999), 338-41.

33) Erik Eynikel. “Judges 19-21, An ‘Appendix’: Rape, Murder, War and Abduction.” *Communio viatorum* 47 (2005), 108-9.

34)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1-2:5 전체적인 서론

a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에서의 범죄(1:1-36)

b 제의적 범죄와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선언(2:1-5)

2:6-16:31 사사시대의 개괄적인 상황설명과 개별적인 사사들의 이야기

서론(신명기적 편집): 사사시대의 일반적 상황(2:6-3:6)

사사들의 이야기 (3:7-16:31)

17:1-21:25 후기/부록

는 표현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모든 폭력사건이 왕의 부재 때문에 ‘무정부 상태와 폭력의 면허장’³⁵⁾이 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로 평가한다. 편집자는 이스라엘의 질서와 의를 세울 왕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참사를 이용한다. 이 이야기의 성폭력 사례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비판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으며, 왕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에 적절한 일화이다. 그러면서도 이야기의 배경이 기브아, 야베스-길르앗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초의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이고, 자신의 수도를 기브아에 세우고, 암몬족으로부터 야베스-길르앗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울의 입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사울의 비판을 통해 옹호하고자 했던 다윗왕조의 남자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를 범했다(삼하 11:2-27; 13:1-22; 16:20-23).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이 부계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의 존립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자행된 성폭력이었다면, 다윗왕조의 남자들이 벌인 성폭력은 그 가부장제적 질서에서 권력을 잡은 남성들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반면 신명기사가의 역사편집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기술하는데 여성들의 이야기를 적극 활용하는 점인데,³⁷⁾ 사사기 19-21

b' 단지파의 이주와 우상숭배(17:1-18:31)

a' 베냐민지파와 기브아에서의 범죄(19:1-21:25)

35) 필리스 트리블, “이름없는 여인과 폭력의 난무.”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성서의 여성신학적 재조명』 최만자 역 (서울: 전광사, 1989), 116.

36) 트리블, “이름없는 여인과 폭력의 난무,” 116-7. 신명기 역사에 있어서 사울과 기브아와의 연관성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으며(삼상 10:26; 11:4; 13:15; 14:2; 15:34; 삼하 21:6), 사울과 야베스 길르앗의 친밀한 관계도 언급되고 있다(삼상 31:11; 삼하 2:4-5; 21:12).

37)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여호수아의 서막에 라합의 이야기(수 2장)가 등장하며, 사사시대의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삿 3-4장), 왕정으로의 전환기에 하나의 이야

장의 참혹한 성폭력 이야기 역시 이스라엘이 부족 동맹사회에서 왕정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점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경적 배열에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사건은 한편에서는 사사기 3-4장의 여성 사사 드보라 이야기와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적장을 살해한 용맹스런 야엘의 이야기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왕정을 탄생시킬 예언자를 낳은 한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70인역의 경우는 “사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룻 1:1) 일어났던 룻의 이야기를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다. 트리블은 사사기 19-21장의 이야기가 룻과 한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정경적 순서에 대하여 “비록 룻이나 한나와 같은 존재가 그들 자매들의 고통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달래주며, 그들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³⁸⁾

이스라엘 역사에서 침묵당한 사건으로 묻혀질 수 있었던 기브아와 실로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알려지게 한 편집자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보응의 신화에 근거한 어떠한 신학적 해석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의 참혹한 역사를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시켜 이후 이스라엘에 왕정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동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사건을 피해여성의 시각에서 조명하기보다는 왕정의 출현 동기와 함께 초대왕조에 대한 비판의 사료로 삼으려는 중심신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 두 이야기의 합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사기 19-21장의 윤간과 집단납치와 강제

기(삼상 1-2장) 등이 그 예이다.

38) 트리블, “이름없는 여인과 폭력의 난무,” 118-9.

결혼은 국가 혼란기와 전쟁 중에 벌어진 성폭력의 관행이다. 지금도 아프카니스탄, 동티모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남성중심의 성규범과 가부장적 지배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여성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류된다.

먼저 이 두 이야기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위안(‘comfort’) 수단이나 다른 사회구성원 혹은 가족 내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용품(mob)으로 제공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류된다.³⁹⁾ ‘위안부’ 제도는 전시 군인의 성적욕구의 충족을 통해 군의 사기 진작과 성병 예방, 그리고 강간 사건의 방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던지는 것은 남성을 성적욕구 충족자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잠재움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성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처럼 비추지고 있다.

둘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의 이야기와 야베스-길르앗과 실로에서 강제결혼을 위해 집단으로 납치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여성은 희생될 수 있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공창제도를 전시 상황에서 군부에 적용한 것인데 공창제도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개별 가정의 가부장적 질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달리 말하면, 남성의 일탈적인 성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이를 공창제도를 통해서 흡수함으로써 아버지과 순종적이고 순결한 어머니로 구성된 개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정의 가부장적 질서가 구현된 가족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논리 위에

39) Yani Yoo, “Han-Laden Women: Korean ‘Comfort Women’ and Women in Judges 19-21,” *Semeia* 78 (1997), 42-43. 이글에서 유연희는 제2차 대전 중 일본군에게 ‘선물로’ 주어진 ‘위안부’ 여성들과 베냐민 군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야베스-길르앗과 실로의 처녀들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한다.

세워진 제도라고 옹호한다.⁴⁰⁾ 사사기 21장의 전시 하 성폭행 피해자 여성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경험은 여성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혈통계승의 재생산 도구로 대상화시킨 인간 공동체에서의 추방 경험이다.

셋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21장의 여성들이 겪은 전시 하 집단 성폭력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다. 전쟁과 같은 무력갈등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극대화하는데 그 대상은 보호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의 경우 빈곤한 하층계급의 여성이 ‘위안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레위 남자의 아내의 경우도 하녀(maidservant)로 불리었는데(삿 19:19), 매튜스(Victor Matthews)는 이러한 낮은 신분이 기브아에서 주인의 딸이 아닌 레위남자의 아내만 문밖으로 던져진 이유라고 설명한다.⁴¹⁾ 야베스-길르앗과 실로의 처녀들 역시 계급적으로 하층민이었던 증거는 없지만 사회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무기력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 사사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언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딸들은 그녀를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지만(삿 11:40), 실로의 무고한 200명의 여인들의 죽음은 애도받지 못하였다.

넷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의 성폭력 희생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제2의 추방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 하나로 합류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기까지 공식적인 역사에서 침묵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정전협정에서도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구약성경의 다른 정경본문에서도 기브아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윤간당한 레위 남자 아내의 아픔과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는다.

40) 김희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93.

41) Victor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Genesis 19 and Judges 19,” *Biblical Theology Bulletin* 22 (1992), 9.

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의 성폭력 희생자들의 추방의 경험은 그들의 관점에서 기억되고 회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민족, 국가의 거대 담론에 희생되어 대상화되거나 역사서술을 위한 사료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성폭력 사건이 보여주는 인권유린 현장에 대한 고발이나, 피해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반성이 없거나 부족하다. 여성비하,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군·위안부와 성서의 희생된 이야기들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적절한 반성을 통한 신학적 성찰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에도 같은 폭력은 반복되게 된다. 가해자들의 왜곡된 기억과 주장은 과거의 범죄를 묵인하고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삿 19장). 사죄하지 않는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죄책 고백을 하지 않는 레위남자의 왜곡된 증언은 이스라엘의 내전을 불러왔던 점을 유념해야한다. 나아가 성서의 성폭력 본문에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 내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도 침묵하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추방당한 여인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는 한국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부의 광기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다. 기억하고 드러내기에는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운 상처라는 공공의 묵인 때문에 오랫동안 담론화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픈 상처의 기억을 들춰내는 것은 단지 지나간 역사를 복원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역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공포의 기억은 ‘반성적 기억’으로 전환되어야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억은 지나간 것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해명하는 ‘매개물’이며,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의 내용을 오늘날의 대지에 표시하는 것이다.⁴²⁾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교회여성연합회의 일본인 매춘관광 반대 운동이 있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일본인 매춘관광 문제의 역사적 뿌리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억의 투쟁의 결과이다. 전시 하에 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처벌할 수 없었던 성폭력을 범죄로 판단한 여성들의 결의는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 이슬람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 르완다 내전 속에서 행해졌던 강간,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의 원천 이 되고 있다. 매년 11월 25일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지키는 과정에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을 기억하고 연대해 준 공동체의 해방을 향한 공동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복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느 관점과 누구의 이익 을 대변하면서 해방과 추방의 경험을 기억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험이 남성의 경험이든 여성 의 경험이든 상관없이 그 경험을 역사해설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성폭력 희생자들이 자신의 추방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성경의 성폭력 본문,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성폭력의 이야기들은 피해자의 과실이 초점이 되지 않고 여성의 권리가 즉 인권이라는 인식 하에 피해여성들을 수치 스러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조직적, 제도적 폭력의 희생자로 기억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회자하며 재발을 방지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 의 창조질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영혼을 달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동시대인들의 기억과 반응을 촉구하는 트리블의 말로

42) 발터 벤야민, 『발굴과 기억』 김영옥, 윤미애, 최성만 역 (서울: 길 출판사, 2007); 김미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2-3에서 재인용.

글을 마친다.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아직도 붙잡히고, 배반당하고, 강간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사지가 잘려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해 내는 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생명력이 있으며, 또한 항상 모든 것이 좋지는 않다. 고백의 차원을 넘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⁴³⁾

<주요어>

사사기 19-21장, 여성신학, 성폭력, ‘위안부’ 할머니, 해방, 추방

<key word>

Judges 19-21, feminism, sexual violence, ‘comfort’ women, liberation, exile

* 접수일 2015년 8월 20일, 수정일 2015년 9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30일

43) 트리블, “이름없는 여인과 폭력의 난무,” 121.

참고문헌

- 강만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강선미, 야마시다 영애(山下英愛).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국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한국여성학』 9 (1993), 52-89.
- 강영심, “종전 후 중국지역·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140-74.
- 강정숙, “역사용어 바로쓰기: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315-20.
_____,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일본 군관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141-224.
- 김미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5 (2009), 217-45.
- 김정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찬규, “강제연행 중군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기독교사상』 405 (1992), 164-169.
- 김희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아세아연구』 53:3 (2010), 79-108, 230.
- 박해룡, “사사기의 구조와 신학적 경향,” 『신학논단』 20 (1992), 347-364.
- 버틀러, 트렌트, 『사사기』 조호진 역, WBC 8, 서울: 솔로몬, 2011.
- 윤미향, “20년간의 수요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자들과 여성들의 연대,” 『한국여성신학』 74 (2011), 146-174.
-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출판부, 2004.
_____,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2 (2003), 39-61.
_____,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1:4 (1998), 195-219

- 이명원, “2차 대전 말기, 오키나와 전쟁에서의 조선인 군부와 종군위안부의 전쟁체험,”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9), 3-10.
- 성주진, “사사기의 역사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중심으로,” 『신학정론』 12 (1994), 263-289.
- 야마시타 아키코, “일본군 성노예제도 문제와 기독교- 피해자 정의와 국가 정의의 이분화,” 홍민기 역, 『기독교사상』 66 (2014), 56-76.
- 트리블, 필리스, “이름 없는 여인과 폭력의 난무,”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회생: 성서의 여성신학적 재조명』 최만자 역, 서울: 전광사, 1989, 87-122.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서울: 한울, 1995.
- 한국정신대 연구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2』, 서울: 한울, 200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진상 규명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 1』,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3.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 2』,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 3』,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쓰는 역사』, 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0.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 5』,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 허란주,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정지혜 역, 『아세아연구』 53:3 (2010),

7-40.

- Amit, Yaira and Jonathan Chipman,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38, Leiden: Brill, 1999.
- Bal, Mieke,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Eynikel, Erik, "Judges 19-21, An 'Appendix': Rape, Murder, War and Abduction," *Communio Viatorum* 47 (2005), 101-115.
- Jones-Warsaw, Koala, "Toward a Womanist Hermeneutic: A Reading of Judges 19-21,"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Judg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72-86.
- Keefe, A., "Rapes of Women/ Wars of Men," *Semeia* 61 (1993), 79-97.
- Matthews, V.,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Genesis 19 and Judges 19," *Biblical Theology Bulletin* 22 (1992), 3-11.
- Mayes, A. D. H., "Deuteronomistic Royal Ideology in Judges 17-21," *Biblical Interpretation* 9 (2001), 241-58.
- Niditch, S., "The 'Sodomite' Theme in Judges 19-20: Family, Community, and Social Disintegra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4 (1982), 365-78.
- Yoo, Yani, "Han-Laden Women: Korean 'Comfort Women' and Women in Judges 19-21," *Semeia* 78 (1997), 37-46.

<초록>

전쟁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추방 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이영미

(한신대, 구약학)

인류의 전쟁역사는 여성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된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여준다. 한국 현대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구약성경의 집단 전쟁성폭력 사건(삿 21장)은 전시 하 이루어진 조직적인 납치와 성폭력의 관행이다. 이 두 이야기는 아프카니스탄, 동티모르, 미얀마 등의 무력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 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폭력’이다. 이 두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가 다르면서도 가부장제와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류된다.

먼저 두 이야기는 남성중심의 성규범을 기초로 세워진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이 두 이야기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성욕해소와 가족 내의 다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부계혈통을 잇기 위해 여성 개인은 희생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된다. 셋째, 이 두 이야기는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의 성폭력 희생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제2의 추방을 경험한다. 끝으로 두 이야기에서 그들의 경험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기억되고 회상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의 거대 담론에

희생되어 대상화되거나 역사서술을 위한 사료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과거의 역사와 성경의 성폭력 본문에 침묵하는 교회는 오늘날의 성폭력으로 인한 불의에도 침묵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동일한 죄의 역사를 멈추고 해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국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연대해야 한다.

<Abstract>

Eliciting the Memories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War for Liberation:

the Cases of 'Comfort' Women in Korean History and the
Women in Judges 19-21

Prof. Young-mi Lee

(Hanshin Theological University)

History of War is full with stori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e story of 'comfort' women in Korean modern history and war crime against women in Gilead and Shiloh in Judges 21 ar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tragic history of war even in today. These two stories join into one stream i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wo stories are based on male oriented sexual norm that believe male sexual desire is uncontrollable and needs to be released. Second, two stories show that women are degraded

as second citizens who support the patrilineal society by becoming sexual object and childbearer for male descendant. Third, they reflect women's vulnerable position, unprotected in the society. Fourth, in both stories, women are excluded from the main stream of society. Finally, the stories are retold not from the victim's interest but used for the debate of nation or history.

In celebration of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y, Korean churches need to remember the stories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war as the forgotten history will be repeated.